

제15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 보고자료
(2005. 9. 2)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에 관한 종합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보 고 순 서

I . 평생학습관 현황	1
II . 평생학습의 필요성	3
III . 우리교육청의 평생교육 운영실태	5
IV .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에 관한 종합계획	6

■ 부록(참고자료)

I . 평생학습관 현황

가. 일반현황

(2004. 12. 31현재)

기관명	대지 (㎡)	연면적 (㎡)	직원수 (명)	평생학습프로그램		보유 도서수(권)	예산(백만원) [인건비포함]
				강좌수	참여인원		
고덕평생학습관	9,696	2,964	24	68	41,322	167,884	1,409
마포평생학습관	4,400	9,716	43	120	168,153	188,620	3,942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1,668	1,824	11	4	985	110,244	본관포함
영등포평생학습관	1,857	4,896	30	57	30,184	178,206	1,718
중계평생학습관	3,055	4,206	26	37	25,575	150,351	1,478
계			134	286	266,219	795,305	8,547

나. 서울지역 평생교육시설 현황

(2005. 5. 31현재)

구 분	기관수	백분율(%)	구 분	기관수	백분율(%)
평생학습관	4	0.5	대학부설평생교육원	36	4.1
공공도서관	42	4.8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19	2.2
문화원	24	2.8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3	0.3
박물관	36	4.1	원격교육형태평생교육시설	286	32.8
여성능력개발기관	24	2.8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27	3.1
청소년수련관	23	2.6	시민사회단체평생교육시설	12	1.4
사회복지관	95	10.9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20	2.3
노인복지관	26	3.0	지식인력개발평생교육시설	184	21.1
원격대학	10	1.1	주민자치센터	529	비포함
합계				871	100.00

※ 평생학습관 우선 지정 대상시설

다. 전국 시·도의 평생학습관 현황 비교

(2005. 6. 30현재)

시·도	평생학습관수		시·도	평생학습관수	
	설치	지정		설치	지정
서울특별시	4	0	강 원 도	5	17
경 기 도		22	충청북도		16
부산광역시		22	충청남도	2	14
대구광역시		8	전라북도		18
인천광역시		16	전라남도		25
광주광역시		15	경상북도		23
대전광역시		20	경상남도		22
울산광역시		4	제 주 도		5

- 설치 :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평생학습관
- 지정 :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평생교육시설로 교육감이 지정하는 평생학습관(도서관, 문화원, 복지관 등)

☞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서울도 타 시·도와 같이 평생학습관을 지정하여 법에 의해 지역 평생교육 기반을 강화할 계획임

II. 평생학습의 필요성

□ 국내외적 배경

- 1996년도에 개최된 OECD 교육부장관 회의에서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는 “평생학습이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2004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이 3,000명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3.6%로 증가하고 있으나 OECD 선진국의 절반 수준임

☞ 덴마크 56%, 핀란드 55%, 스웨덴 54%, 미국 51%, OECD평균 35.6%

□ 법적 배경

- 1999년에 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참여를 의무화 (평생교육법 제9조)
- 평생학습관 지정 및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은 교육감의 의무 (평생교육법 제13조 및 제14조)

Ⅲ. 우리교육청의 평생교육 운영실태

□ 현황

-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평생교육 운영은 미흡한 편임
- 국내외 사회변화 및 법적인 배경으로 볼 때 평생교육은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이나 서울지역의 평생교육은 체계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설립되어 있는 4개 평생학습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살펴보면 특성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 교육문화위원회 평생학습관 행정감사 및 질의·답변시 지적사항

□ 평생교육 추진이 미흡한 이유

○ 서울교육의 특수성

- 서울은 수도로서 시민의 평생교육보다는 전국에 걸친 강한 영향력과 파급 효과로 “공교육”에 행정력 집중
- 평생교육 분야에 편성되는 예산이 극히 적음
 - ☞ 서울교육 재정은 국고보조금과 서울시 전입금 등 외부 의존도가 높아 교육청 운영 특성상 학교교육 투자에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예산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교육감의 평생교육에 대한 의무

-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 평생학습관과 지역평생교육 정보센터를 교육감이 운영하도록 법으로 규정
-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교육감의 소관 사항임

평생교육법상 의무 규정

-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평생교육법 제10조)
- 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등을 활용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제13조)
- 교육감은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평생교육법 제14조)

IV.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에 관한 종합계획

□ 제도 및 시스템 구축

○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세부 시행 규칙 제정

-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수정 가결 : 2005. 6. 28
 - 조례 공포 : 2005. 7. 14
-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서울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의결 : 2005. 8. 22
 - 교육인적자원부 승인 신청 : 2005. 8. 23
 - 조례 시행규칙 공포예정 : 2005. 9월 중

제정 취지

-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평생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평생학습관을 지역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서울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평생교육시설을 교육감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지원을 받아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 서울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역할 및 기능 강화

-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중앙 평생교육정보센터, 지역 평생학습관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면서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기회 확대와 정보제공의 구심체로서 역할
-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 평생학습 상담 등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기능 강화(평생교육법 제14조)
- 서울 전체의 평생교육정보를 수집·정리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연구 지원기관 역할 수행
- 평생학습도시내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의 연계 강화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도시가 각종 평생학습 행사 공동 개최하여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유도

※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정한 서울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인 마포평생학습관에서는 서울지역 평생교육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나 관련업무 담당 평생교육사가 1명으로 연구 및 기획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인원 보강과 예산 지원으로 서울 지역평생학습관의 기능·역할을 강화할 계획임

□ 향후 서울 평생교육 추진계획

○ 4개 평생학습관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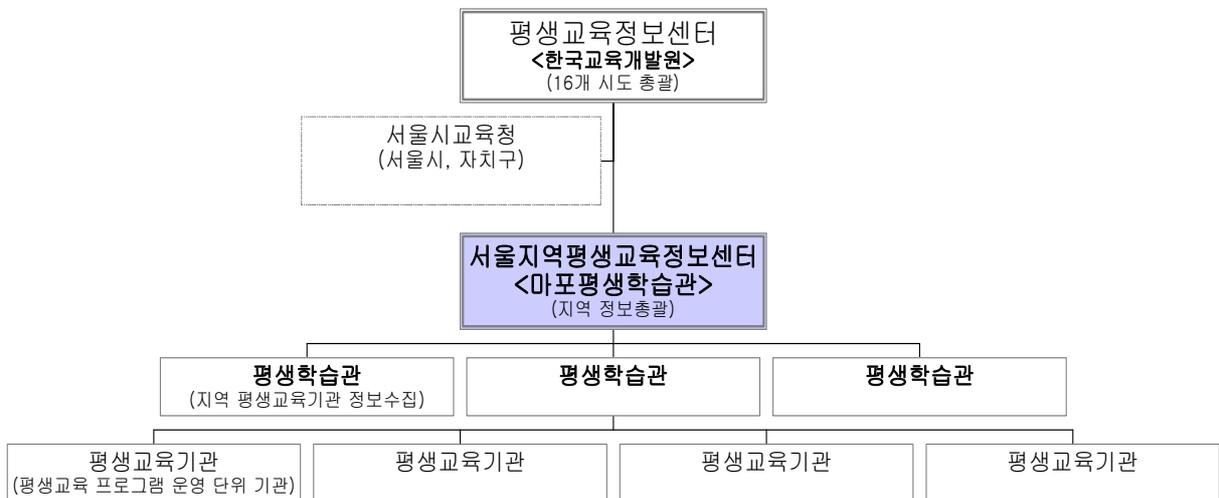
- 4개 평생학습관(고덕, 마포, 영등포, 중계)부터 우선적으로 활성화 추진
-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프로그램의 질 향상
 - ☞ 운영 위원회 소속 평생교육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으로 지역특성을 감안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민주적으로 운영
- 현재 4개 평생학습관에서 나름대로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보완(업그레이드)하여 개설

내 용

- 마포평생학습관 : 문해교육(비문해자 초등교육과정 운영 등)
- 고덕평생학습관 : 장애인이해교육(수화교실)
- 영등포평생학습관 : 학부모대상교육(부모교실)
- 중계평생학습관 : 정보화관련 자격취득강좌 등
(워드, 컴퓨터활용능력시험 등)

○ 평생교육시설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운영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 중 법에 규정된 평생학습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 ☞ 타 시·도의 경우,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경비 보조(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
- 평생학습관 수를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지역 평생학습 기반 강화
 - ☞ 자치구내 평생학습관 상호간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 등 유용한 정보의 교환으로 평생학습관 운영을 내실화



※ 단위 평생교육기관(도서관, 문화원 등) ⇒ 평생학습관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 (중앙)평생교육정보센터로 연결되는 지역의 평생학습 운영 체계도임

□ 종합의견

- 1999년 평생교육법 제정 이래 사회경제적 변화와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의 평생교육 관심이 고조되는 추세임
- 평생교육의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최근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 금년도 평생학습도시 선정 : 6개 도시를 계획하였으나 신청 도시가 많아 14개 도시 선정(선정 도시당 2억원 지원)
- 평생학습이 활성화된 도시는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과 교육청과의 협력사업 추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금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그동안 교육청이 미흡했던 평생교육 활성화에 주력하고자 함